

■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1년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2021년 수가	2021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1등급	35,480	5,322
	2등급	32,850	4,928
	3등급	30,330	4,550
	4등급	28,940	4,341
	5등급	27,560	4,134
	인지지원등급	27,560	4,134
6시간 이상	1등급	47,570	7,136
	2등급	44,060	6,609
	3등급	40,670	6,101
	4등급	39,290	5,894
	5등급	37,890	5,684
	인지지원등급	37,890	5,684
8시간 이상	1등급	59,160	8,874
	2등급	54,810	8,222
	3등급	50,600	7,590
	4등급	49,220	7,383
	5등급	47,820	7,173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10시간 이상	1등급	65,180	9,777
	2등급	60,380	9,057
	3등급	55,780	8,367
	4등급	54,370	8,156
	5등급	52,990	7,949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12시간 이상	1등급	69,890	10,484
	2등급	64,750	9,713
	3등급	59,810	8,972
	4등급	58,430	8,765
	5등급	57,040	8,556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 단기보호

(단위 : 1일, 원)

등급	2021년 수가	2021년 본인부담
1	58,070	8,711
2	53,780	8,067
3	49,680	7,452
4	48,360	7,254
5	47,050	7,058

■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30분	14,750	2,213
60분	22,640	3,396
90분	30,370	4,556
120분	38,340	5,751
150분	43,570	6,536
180분	48,170	7,226
210분	52,400	7,860
240분	56,320	8,448

■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021년 수가	2021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75,450	11,318
차량이용(가정 내)	68,030	10,205
차량 미 이용	42,480	6,372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